

2023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행정기획위원회(환경과)

의안번호	제 136 호
제 출 자	성북구청장 (2023. 5. 23.)
의 안 명	2023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전문위원 정 진 만

1. 제안이유

2022년 기후변화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로 2023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설치 개요

- 1) 설치연도 : 2013년
 - 2)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6조
 - 3) 설치목적 : 성북구 기후변화대응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
- ※ 재원조성 : 성북나눔발전소 운용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등
- 4) 사업내용

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나) 고효율에너지인증기자재 설치 지원사업

나.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 주요 변경개요

1) 운용계획 변경 사유

가)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증 42,967천원)

- 기타사업수입 증가(증 39,843천원)
- 기금계좌 발생이자 증가(증 943천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집행잔액 발생(증 2,181천원)

나) 2023년도 지출계획 증가(증 420천원)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개정 예정에 따른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수당 반영(증 420천원)

2) 2023년 운용계획 변경 내역

가) 기금조성총괄 변경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도 말 조성액(A)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 말 조성액(A+B)
		수입	지출	증감(B)	
당초계획	109,866	55,450	63,140	△7,690	102,176
변경계획	152,833	55,450	63,560	△8,110	144,723
증감액	42,967	-	420	△420	42,547

나) 자금수지총괄 변경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당초계획 수입액	변경 수입액	증감	항목	당초계획 지출액	변경 지출액	증감
합계	165,316	208,283	42,967	합계	165,316	208,283	42,967
예치금회수	109,866	152,833	42,967	예치금	102,176	144,723	42,547
보조금	31,450	31,450	변동 없음	비용자성 사업비	63,140	63,560	420
이자수입	1,000	1,000		이 하 여 백			
기타수입	23,000	23,000					

- 2022년도 말 조성액 증가(증 42,967천원)로 인한 2023년도
예치금회수(수입) 증가(증 42,967천원)
- 2023년도 예치금(지출) 증가(증42,547천원) 및 비용자성사
업비 증가(증 420천원)
 - 비용자성사업비 증감액 :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수당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
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
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

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도 기후변화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로, 2022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 한 것으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¹⁾ 단서조항에 따르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당초계획 지출액 1억6,531만원보다 25.99%인 4,296만원이 증액된 2억828만원으로 변경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 한 것임.
- 성북구 기후변화기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6조²⁾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기금의 재원은 성북나눔발전소 운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6조(기후변화기금) ① 구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대응 시책 추진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변화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0.12.31.)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가 신·재생에너지를 판매한 대금
2. 일반회계 전입금 (개정 2020.12.31.)

용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등이며,
기금의 용도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증진사업,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설치 지원, 민간단체 등의 기후변화 대응 교육 및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등임.

-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에 따라 4,296만원의 추가 수입 및 지출이 발생하여, 2023년도 기금을 기정예산 1억6,531만원에서 2억828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20.12.31.)

4. 그 밖의 잡수입 등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 사업자, 민간단체 또는 전문기관이 기후변화대응을 위하여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또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 등을 위한 지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규정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증진사업

3.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른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설치 지원 (개정 2020.12.31.)

5. 민간단체 등의 기후변화대응 교육 및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본조신설 2013.9.26]